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우수학자지원사업 신청요강

2012. 1.



주요사항 요약

구분	2011	2012	비고
지원예산	① 총예산 : 1,500백만원(40과제 내외) - 신 규 : 311백만원 (8과제 내외) - 계 속 : 1,189백만원(32과제 내외)	① 총예산 : 1,491백만원(40과제 내외) - 신 규 : 280백만원 (7과제 내외) - 계 속 : 1,211백만원(33과제 내외)	
지원대상	①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① 「학술진흥법」 제6조 -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 전임교원 임용 후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최근 10년간 최소 1,200% 이상의 업적이 있는 자	
지원규모 (연/과제당)	① 단독연구 : 연 30백만원	① 좌동	
지원기간	① 5년(2년+2년+1년)	① 5년(2년+3년)	
평가절차	① 추천심사 → 요건심사 → 전공심사 (패널) → 종합심사	① 추천심사 → 요건심사 → 전공평가 (온라인 평가+위원회 평가) → 종합평가	
연구결과물 제출	① 전문학술저서 : 1편 이상	① 좌동	
추진일정	① 신규 과제 - 1월 공고/2월 접수/3~4월 평가 /5월 지원 - 연구개시 : 5.1	① 좌동	



차 례

I.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	
■ 사업목적	1
■ 지원근거	1
■ '12 중점 추진방향	1
■ 기대효과	2
■ 추진일정	2
II. 지원내용	
■ 예산	2
■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3
■ 지원유형	3
■ 연구개시	3
III. 신청	
■ 신청자격	4
■ 신청기간 및 방법	5
■ 신청절차	6
■ 신청 및 참여제한	8
IV. 평가 및 선정	
■ 평가단계	0
■ 평가항목 및 배점	0
■ 평가 절차 및 내용	0
■ 선정 및 협약체결	2
V.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2
■ 연구비 관리	2
VI. 연구과제 관리	
■ 평가유형 및 내용	3
■ 보고서 제출	4
■ 연구성과 관리	6
VII. 기타	
■ 간접비 지급	6
■ 학술지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7
■ 기타 참고사항	7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18
[붙임2] 연구업적 산정 세부내역 일람표	19
[붙임3~9] 저술계획서 및 관련자료 양식	20
[붙임10]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33

1. 사업목적

- 인문사회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지닌 우수학자 지원 및 우수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 우수학자가 저술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 업적을 집대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 환경 지원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3조 및 제5조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3. '12 중점 추진방향

- 지원대상 요건 강화를 통해 최고 수준의 우수 학자 선정
 - ※ 최근 10년간 연구업적 700% → 1,200%로 상향 조정
- 평가의 전문성 강화
 - ※ 전공평가 : 온라인 평가 + 위원회 평가로 2단계 평가
- 계속과제 단계평가 절차 간소화
 - ※ 지원기간 내 2회 평가(2년+2년+1년) → 1회 평가(2년+3년) ('12년 신규과제 부터 적용)
- 연구성과 확산 추진

- 우수학자 출판기념회 개최 ('12.12월 중)
- 우수학자 선정 과제 보도자료 배포
- 우수학자 선정 대상자의 차년도 석학 인문강좌 강연자 Pool로 추천
-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통해 일반인 및 학문후속세대로의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4. 기대효과

- 장기적 심화연구와 저술활동 촉진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세계적 석학 배출
- 우수한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통한 학문후속세대로의 연구 저변 확대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012. 1월	- 2012년도 우수학자지원사업 시행계획 확정.시행 - 우수학자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2. 2월	- 신규과제 접수
2012. 3월	- 신규과제 평가 실시 - 단계 평가 실시
2012. 4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2012. 5월	- 신규과제 연구 개시
2012. 6월	
2012. 7월	
2012. 8월	- 단계 평가 실시
2012. 9월	
2012.10월	- 단계평가 실시,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성과 홍보
2012.11월	
2012.12월	- 우수성과 출판기념회 개최

II

지원내용

1. 예산

(단위:과제/백만원)

구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비 고
신규과제	240	7	
계속과제	1,251	33	
합 계	1,491	40	

2.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지원분야 : 인문학 및 사회과학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
 - 해당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여 동일 학문 분야의 국내·외 학계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자
 - 연구성과의 우수성이 국가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
 - 저술활동을 통해 해당분야의 학문이론을 선도하고 새로운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자
 - 국내 대학 또는 학회 소속 연구자(외국 대학 소속 연구자 제외)
 - ※ 신청시 평가요청분야는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분류표 상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분야에 한함
 - ※ 신청 과제의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구분은 온라인 신청시 요청한 평가분야 1순위에 따름
 - ※ 편람, 사전편찬, 교재개발, 번역,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단독연구	연 30백만원(간접비 별도)	5년 (2년+3년)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2012년 5월 1일

1.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신청 마감일 기준 국내 대학·학회에 소속되고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자. 단, 외국 대학 소속 연구자 제외

①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고 ② 전임교원 임용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최근 10년간 연구업적 1200% 이상(전문학술저서* 포함)인 연구자로 관련 학회가 추천한 자 * 인문학분야 300%, 사회과학분야 200% 이상 ※ 위 자격조건 ①~③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관련 학회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등재지 발행 학회

※ 「학술진흥법」 제6조 제6조(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 중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연구자 또는 대학등은 학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자 또는 대학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추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협약의 체결 및 제3항에 따른 결과의 보고·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연구업적 산정기준

구 분	평가항목	1건당 인정편수	인 정 범 위
학술 논문	국제저명 학술지	2편	SCI, SSCI, A&HCI 등재학술지
		1.5편	SCIE, SCOPUS 등재학술지
	국내학술지	1편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0.8편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학술저서 (단행본)	전문학술저서/번역서	2편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되며,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

○ 연구업적 인정기준

구분	단독	공동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저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인정율	100%	70%	50%	30%	25%

○ 논문 1편당 산정방법(예시)

- 단독 논문 : 1편 × 100% = 100%
- 공동 논문(2인 저자) : 1편 × 70% = 70%

○ 연구업적의 논문은 게재 당시 학술지의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여부를 기준으로 산정함

- 등재(후보) 학술지 수록 여부는 선정 학술지의 학술지 평가 신청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발행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한함

○ 학술저서(단행본) 산정방법

- 단독저서 : 2편 × 100% = 200%
- 공동저서(2인 저자) : 2편 × 70% = 140%

○ 연구업적 1200%는 신청 기본요건으로 연구업적 점수가 선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음

○ 연구업적 산정세부내역 일람표 : 붙임 2 참고

※ 동일한 업적물은 발간 형태가 다르더라도 중복 계산할 수 없음

※ 기재한 모든 연구업적은 반드시 신청 전에 재단 KRI(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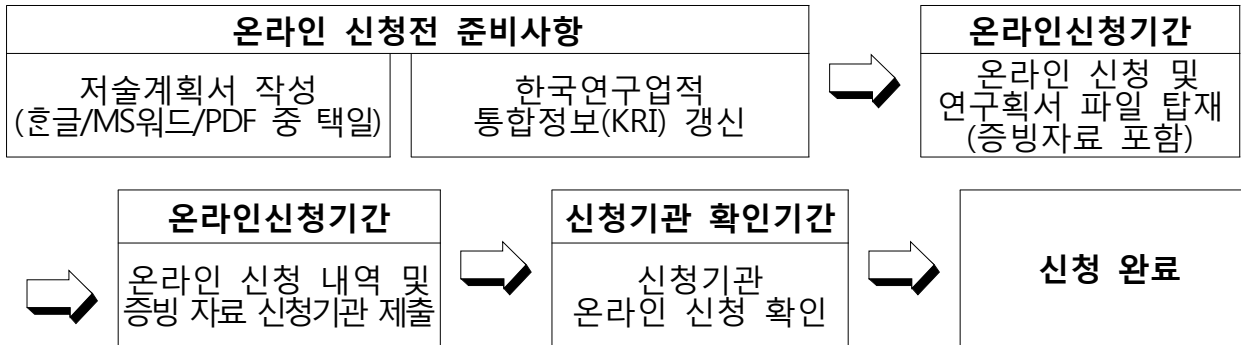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12. 2. 13(월), 14:00 ~ 2. 21(화), 18:00까지
- 기관 확인 : 2012. 2. 22(수), 14:00 ~ 2. 24(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 신청절차



가. 온라인 신청 전

- 1) 연구참여자는 재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연구기반정보→「한국연구업적 통합정보(KRI)」에서 본인의 정보(연구업적 등)를 입력, 수정하여야 함 (신청 후 추가 등록한 정보는 반영되지 않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청 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KRI 정보 갱신 시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신청 전 사전 확인). 정보 공개 여부는 반드시 공개로 설정

- 2)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서 연구비 신청하는 것을 제한함

- 3) 온라인 신청 시 저술계획서 파일을 동시에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한글」, 「MS워드」, 「PD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단의 소정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PDF 파일 권장)

- 4) 신청과제의 평가분야 및 담당 학문단은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마당→연구분야분류표 →학술연구분야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제출서류 준비]

- 저술계획서 : [붙임3] 양식으로 작성. PDF파일 탑재 권장
 - ※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붙임3-1] 양식으로 작성 탑재
- 학회장추천서 : [붙임4]의 양식으로 학회의 추천을 받아 탑재
 - ※ 학회장의 직인이 없이 탑재된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 ※ 추천 학회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발행 학회(등재후보 학회 제외)
- ※ 학회별로 2인까지 추천 가능
- **학술활동 이력서** : [붙임5] 양식으로 작성하여 탑재
- **연구논문 목록(연구업적산정)** : [붙임6] 양식은 신청 시스템에서 최근 10년간의 업적(논문) 중에서 선택 저장
- **연구논문 목록(기타)** : 신청 시스템에서 [붙임6] 연구논문 목록(연구업적산정) 선택 시 미선택 업적은 [붙임7] 연구논문목록(기타)으로 자동 저장됨
- **저서목록** : [붙임8] 양식은 신청 시스템에서 최근 10년간의 업적(전문화술저서, 역서) 중에서 선택 저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붙임10] 양식으로 작성 탑재
 - ※ 신청 시스템에 탑재하는 모든 자료는 가능한 PDF파일 탑재 권장함
 - ※ 업적평가 시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업적으로 선택한 연구논문 및 전문화술 저서(역서)를 준비 바람

나. 온라인 신청

- 1) 연구자는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함(접수번호는 온라인 신청완료 후에만 볼 수 있음)
- 2) 최근 10년간 연구업적 1,200% 이상(전문화술저서* 포함)을 선택하여야 함
 - * 인문학분야 300%, 사회과학분야 200% 이상
- 3)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마감일 종료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교체 및 수정한 후에는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4) 온라인 신청 및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 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과제번호는 신청 마감 이후에 일괄적으로 부여됨(접수번호와 과제번호는 다름)
 - 저술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기 전 『인쇄-미리보기』에서 1쪽씩만 보이는지 확인한 후 탑재함(『인쇄-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바꾼 후 저장)

-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탑재함(저술계획서와 별도 분리, 양식은 붙임 참조)

다. 온라인 신청 후

1) 연구책임자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입력내용(계획서 및 관련자료 일체) 1부를 출력하여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제출

2) 신청기관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연구비 중앙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신청 입력내용 1부를 제출받고 기한 내에 신청기관 확인을 완료해야하며, 확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되지 않음

4. 신청 및 참여제한

□ 신청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를 지원 받고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로 인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대학·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에 소속된 자는 학술단체(학회 등) 회원 자격으로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본 사업에 인건비를 신청할 수 없음. 단, 연구기간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경우는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하나 기 수행 중인 과제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신규지원 연구비에서 지원

□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는 1인이 연 3과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는 1과제로 한정하며, 인건비는 중복 수혜할 수 없음

* 상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비 및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관련 1인 3과제 참여기준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과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적용 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함

- 단,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2. 12. 31. 이전인 과제는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기간 만료일이 2013. 1. 1. 이후인 과제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정책 개발 연구과제(정책주제형 대학중점연구소과제 포함), 대학교육과정개발연구지원사업, 개인연구(우수논문지원, 우수학자지원사업), 소규모연구회지원사업, 인문주간 및 강좌 지원의 과제(시민인문강좌, 상설인문강좌),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산학협력형, 융합연구총괄센터), 사회과학연구지원(SSK네트워킹지원, 사회과학 성과.홍보확산지원, 사회과학중장기 Agenda 개발지원) 등은 참여제한 과제수에 포함되지 않음

* 참여제한은 연구비 신청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 즉, 신청한 과제(연구자)가 선정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참여제한에 저촉되면 신청 불가

* 연구비 지급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포함된 연구과제는 연구비 신청 이후에라도 조치사항이 발생 혹은 확인되면 최종선정에서 제외

1. 평가단계

단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추천심사		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학자를 학회별 2인 이하 추천	등재학술지 발행 학회
2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요건심사단 (PM)
3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 평가	저술계획서 및 연구업적 평가	위원회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원회 평가	온라인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	위원회
4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항목 및 배점 : 3단계 전공평가 참조

3. 평가절차 및 내용

가. 제 1 단계 : 학회 추천심사

- 심사방법 : 학회 편집위원회 또는 이사회(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회의)를 거쳐 추천해야 함
 - ※ 평가주관 : 학회(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발행 학회에 한함)
 - ※ 관련 학회 공동 추천 또는 학회별 2인까지 추천 가능
- 심사내용 : 신청요강의 요건 충족 여부 및 관련 분야 우수학자 추천

나. 제 2 단계 : 요건심사

- 심사주관 : 요건심사단(PM)
- 심사방법 :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및 서면에 의한 확인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건 충족 여부

다. 제 3 단계 : 전공평가

- 평가주관 : 전공평가단(온라인 평가 + 위원회 평가)
- 평가내용 : 온라인 평가항목과 위원회 평가항목 동일
 - 저술계획서 :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등 평가
 - 연구업적 :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물의 질적 수준 등 평가
 - 전공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저술계획서 평가 (40)	연구 계획의 우수성 (20)	연구주제 (10)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학문적 가치 .연구내용의 필요성
		연구방법 (10)	.연구방법의 창의성 및 독자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학문의 파급 효과 (20)	학문발전 공헌도 (20)	.연구 성과 예상 .학문의 파급효과 .결과 활용의 적정성 .교육과의 연계성
업적평가(60)			

- 평가결과 반영 : 온라인 평가 50%, 위원회 평가 50%를 각각 반영

라. 제 4 단계 : 종합평가

- 평가주관 : 종합평가단(추천위원회, 재단, 교과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마. 위원회 구성 및 역할

- 명칭 : 추천 위원회
- 인원 : 인문학단 및 사회과학단 각 학문단별 10명 내외
- 구성
 - 시기 : 온라인 신청 접수 후

- 방법 : 학문단별 신청분야 학문영역을 평가할 수 있는 권위자
- 역할 : 전공평가 및 우수학자 과제 추천
 - ※ 전공평가 : 온라인 평가완료 후 참고하여 위원회 전공평가 실시

4.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간 연구비 협약 체결

V

연구비 관리

1. 연구비 지급

지급방법

-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 ※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은 과제별 협약 체결 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함

2. 연구비 관리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에 따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 관리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및 정산 간소화
 -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 본 사업은 선정 후에 연구자가 연구비 비

특별 계상기준 [붙임1]에 따라 연구비를 자율 편성하여 집행함.
단, '여비'중 체재비의 경우 1개월 이상 산정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 정산 보고를 하지 않음. 단, 연구자는 산학협력단(또는 연구기관장)에게 연구비 정산을 해야 함

VI

연구과제 관리

1. 평가유형 및 내용

□ 단계평가

- 평가시기 : 단계보고서 접수 후 차년도 연구개시 전

- 평가방법

구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점검	PM (필요시외부전문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 결과 검토 및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기수행 연구 실적 (8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40)	
향후 연구계획 및 내용 (20)	기수행 연구내용과의 연관성(5)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1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5)	

○ 평가점수 및 조치

점수	등급	조치
80점 이상	Pass	계속지원
70점 이상~80점 미만	Yellow	주의 후 계속 지원
70점 미만	Fail	지원중단

○ 평가결과 활용 : 다음단계 지원여부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당해 단계 연구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2. 보고서 제출

가. 단계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개시 후 1년 10개월 이내
 - ※ 2012년도 선정과제부터 1회 만 제출함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단계보고서(소정양식 온라인 탑재)

나.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종료일까지
 - ※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 제출을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함. 단, 연구 기간내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출방법 : 온라인 파일 탑재
- 제출자료
 - 저술출판 결과물(PDF파일) 탑재 및 출판물 20권 제출
 - ※ 본 사업은 연구결과물을 결과보고서로 인정함
 - ※ 제출한 출판물은 국·공립도서관 및 관계기관 배포

[연구결과물 출판]

- 해외 저명 출판사 출판 권장(국내 출판의 경우,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
 - 영문 저서출판 (인문학 분야 : 권장 / 사회과학분야 : 필수), (단, 사회과학의 경우 영어 이외의 언어로 출판해야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출판물 : 전문 학술저서, 단독
 - ※ 저서 출판을 위한 출판사 선정은 저자의 선택에 위임하되, 학문 영역별 권위 있는 출판사를 권장함

- 연구요약문(국·영문)

※ 연구요약문은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제출

-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

-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사사표기

연구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저서는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다.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제재

○ 연구결과 및 연구결과물 관련 의무 미이행 과제는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처리

※ 세부 제재 조치기준은 향후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처리규정」개정 후 별도 공지

3. 연구성과 관리

- 연구자는 연구진행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연구성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하여야 함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VII

기타

1. 간접비 지급

- 신규 과제의 경우 협약시점 적용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며, 계속과제의 경우 선정년도 혹은 단계평가의 기준년도 적용 고시율을 적용

2.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 '14.12.31.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11.12.7. 발표)에 따라 단계적인 조치를 위해 사업별로 신청 자격 및 결과물 제출에 사용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기준을 '13년부터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술지”로 변경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3. 기타 참고사항

- 신청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 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아연구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해당 연구기관은 배아 연구기관으로의 등록과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얻어야 함에 따라,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아연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문 의 처

□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 사업 및 신청요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지원팀 : 042-869-6202, 6134, 6306, 6130, 6307, 6309
- 사업총괄기획 및 규정 관련 문의
 - 인문사회연구총괄기획팀 : 042-869-6103, 6102
- 전공평가 관련 문의
 - 어문학분야 : 042-869-6391 ~ 3
 - 역사철학분야 : 042-869-6245 ~ 6
 - 법정상경분야 : 042-869-6301 ~ 2
 - 사회과학분야 : 042-869-6083 ~ 4
 - 문화융복합분야 : 042-869-6136 ~ 7 (예술체육·융복합분야)
- 전산 관련 문의(온라인신청, 연구업적통합정보, 전산장애)
 - 정보팀 Help Desk : 1544-6118

붙임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인건비	1. 연구보조원 : 연구에 참여하는 - (전문)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 * 개인별 총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정한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문)학사과정생 및 학사급 연구원 월 50만원 이내 - 석사과정생 및 석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월 150만원이내 * 연구보조원 인건비 계상은 참여기간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은 연구참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이 있어야 하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연구책임자 책임하에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며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당초 참여자격을 연구종료 시까지 인정함. 다만,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참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별표2"를 준용할 수 있음
		2 박사급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외	- 박사급연구원(월 170만원이내 / 1인당)
직접비	연구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연구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적용되어야 함 - 품목, 규격 등 명시하여 계상된 금액 - 국산 공급 가능한 경우 국산품 사용 -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용에 한해 인정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현지교통비 등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활용, 국내·외 교육훈련, 국내외 정보 D/B 네트워크사용료, (해외)기술정보수집비,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운문교열비, 번역감수,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논문게재료 등 연구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실 소요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소요액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세부기준에 따라 지원 - 여비는 인원,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주관 연구기관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 국외여비는 자료수집 등 필요 최소한 인정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계상 가능 - 논문게재료 등 연구결과, 성과의 발표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는 연구종료 후 2년 이내에 집행가능하며, 미집행 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 수당	○ 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경비 * 인건비를 계상한 박사급연구원은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책임자, 일반공동연구원 : 1인 연480만원이내 *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계좌이체

☞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구분	인정범위	저자수	1건당 인정편수	인정율	환산결과
학술논문	SCI, SSCI, A&HCI 등재학술지	1인	2	100%	200%
		2인	2	70%	140%
		3인	2	50%	100%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SCIE, SCOPUS 등재학술지	1인	1.5	100%	150%
		2인	1.5	70%	105%
		3인	1.5	50%	75%
		4인	1.5	30%	45%
		5인 이상	1.5	25%	38%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인	1	100%	100%
		2인	1	70%	70%
		3인	1	50%	50%
		4인	1	30%	30%
		5인 이상	1	25%	25%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인	0.8	100%	80%
		2인	0.8	70%	56%
		3인	0.8	50%	40%
		4인	0.8	30%	24%
		5인 이상	0.8	25%	20%
학술저서	교과서 성격의 저서는 제외되며, 독창적인 이론이 제시된 전문학술저서에 한함	1인	2	100%	200%
		2인	2	70%	140%
		3인	2	50%	100%
		4인	2	30%	60%
		5인 이상	2	25%	50%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

저 술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 연구과제명은 온라인 신청시 입력한 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참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영 문	

<목차>

참고용입니다. 그러나, 저술계획서 작성 시 목차를 작성해 주세요.

- I. 저술계획 ○
 - 1. 연구의 목적 ○
 - 2. 연구방법 및 내용 ○
 - 3. 결과 활용방안 ○
 - 4. 기타사항 ○
 - 5. 참고문헌 ○

- II. 연구추진계획 ○
 - 1.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 2. 연구수행일정 ○

- III. 대표업적 ○

I . 연구계획

※ 아래 내용은 참고하신 후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 저술계획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참조하시어 연구의 목적, 방법 및 내용, 연구성과의 파급효과(학문발전 공헌도, 결과 활용방안 등)를 자유형식으로 기술함
- 저술계획서(연구계획, 참고문헌 목록, 연구추진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파일의 크기는 10Mb (또는 A4 용지 20매 내외)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참고문헌 목록은 15매에 포함되지 않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반드시 쪽수(page)를 기재
- 연구요약문 1페이지 내외로 작성
- 연구과제의 평가는 **무기명심사(Blind Review)**로 진행됨.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및 연구보조원 등을 알아 볼 수 있는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함**.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단, 참고문헌 중에서 본인이 저자인 문헌의 경우 본인이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음

I. 저술계획

1. 연구요약문(1페이지 내외)

2. 연구의 목적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의 독창성,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포함)

3. 연구방법 및 내용

(연도별 연구방법 및 내용 각각 기술)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인력양성 방안, 강연 및 교육과의 연계 활용 방안 등 구체적 기술)

5. 기타사항

(기타 연구내용 계획에 필요한 사항 기술)

6. 참고문헌

II. 저술추진계획

☞ 연차별로 추진계획 작성

년 월	연구수행내용	비 고
2012. 5		
6		
7		
8		
9		
10		
11		
12		
2013.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Writing Plan

- Proposal Title

English:

Korean:

I . Writing Plan (approximately 20 pages)

- Refer to "Evaluation Categories & Indicators" and describe research purpose, methods, contents, expected results and their impacts and other details in free form.
 - ※ table of contents must be included
- Project summary (approximately 1 page)
- Research proposals are subject to blind review. To guarantee the fairness of review proces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applicant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not be written(name, position, etc.). If not, applicants may be put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As for reference list, however, writer is allowed to disclose his or her identification.

1. Project Summary (approximately 1 page)

2. Research Purpose

※ includes necessity of the research, distinctive features of the research, comparison with preceding research, etc.)

3. Research Methods and Contents

※ describe in chronological order

4.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 describe in detail academic and social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lan, linkage with education & lecture, etc.)

5. Others

6. References

II. Table of Writing Plan

※ describe in chronological order

Date	Description of Research Activities	Remarks
May. 2012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2013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		
.		
.		

학회장 추천서

사 업	2012년도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				
학 회 명					
추천자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연 락 처		
	박사학위 취득일자	년 월 일(년 개월)	임용일자	년 월 일(년 개월)	
	주요경력	기 간	소속기관		직위
		~			
~					
추천현황	사 유	추천 사유를 정확히 작성.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방 법	편집위원회 및 이사회 등 회의내용(개최일, 결정방법, 과정 등)을 상세히 기술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p>상기 신청자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지원에 있어서 연구 수행 능력이 뛰어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며 후진양성에도 열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귀 재단의 우수학자지원 적격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2. . .</p> <p style="text-align: center;">학회</p> <p style="text-align: center;">학회장(성명) : (인)</p>					

연구 논문 목록 (연구업적산정)

최근 10년간 연구 논문 실적 (2002. 1. 1 ~ 2012.신청마감일)						
연번	구분	논문명	게재권호 (연월일)	저자 수	환산 %	피인용 지 수
		학술지명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논문업적 산정율 _____ (%)

※ 구분은 SCI, SSCI, A&HCI, SCIE, 재단 등재, 재단 등재후보, 전문학술저서로 표기

※ 저자 수 : 본인을 포함한 저자 수

연구 논문 목록 (기타)

최근 10년간 연구 논문 실적 (2001. 1. 1 ~ 2012.신청마감일)					
연번	구분	논문명	게재권호 (연월일)	저자 수	비고
		학술지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구분은 [붙임6]의 연구논문목록(연구업적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논문 기재

※ 저자 수 : 본인을 포함한 저자 수

저 서 목 록

최근 10년간 저서 목록 (2001. 1. 1 ~ 2012.신청마감일)					
연번	구분	제목	출판 연월일	저자 수	환산 %
		출판사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저서업적 산정율 (%)

- ※ 구분 : 단독저서의 경우 단독, 공동인 경우 공동(저자 수)로 표기
- ※ 구분(단독 및 공동), 출판 연월일 순으로 작성
- ※ 저서를 연구업적에 포함하여 산정

붙임9

주요연구업적개요서 양식

주요연구업적개요서

([붙임6, 8] 해당 논문 및 저서에 한함)

구분	논문	발행년도		게재권호(집)	권 호(집)
연번	1	학술지명 (출판사명)			
제 목					
공동연구원수		환산편수		편	

□ 개요

※ [붙임6]연구논문목록 및 [붙임8]저서목록에 해당되는 수만큼 작성

※ 구분은 논문과 저서로 구분하여 표기, 연번은 목록의 연번(붙임6, 8)과 동일하게 작성(예시작성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개 인 정 보 제 공 및 활 용 동 의 서

본인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2년 월 일

본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_____
 자택전화 _____ 휴대전화 _____
 e-mail _____
 직 장 _____ 직 위 _____
 직장전화 _____ 팩 스 _____

참여연구원 및 연구보조원(본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한국연구재단이사장 귀하